

##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

제정	1996. 3. 1	훈령 제 18호
개정	1998. 10. 2	훈령 제 56호
	2001. 8. 31	훈령 제123호
	2005. 10. 5	훈령 제219호
일부개정	2015. 12. 21	훈령 제389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1. 11. 15	훈령 제499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)
일부개정	2023. 11. 30	훈령 제52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종량제 봉투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봉투의 판매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작한 종량제 봉투(이하 “봉투”라 한다)는 판매인(제3조에 따라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, 2023. 11. 30>

제3조(봉투 판매인의 지정)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삭제 <2015. 12. 21>
2. 삭제 <2015. 12. 21>
3. 삭제 <2015. 12. 21>
4. 삭제 <2015. 12. 21>
5. 삭제 <2015. 12. 21>
6. 삭제 <2015. 12. 21>
7. 삭제 <2015. 12. 21>

② 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지정

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
3. 삭제 <2015. 12. 21>

③ 시장은 전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, 인구수,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15>

④ 시장은 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제4조(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) 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2. 판매인지정서
3. 삭제 <2015. 12. 21>

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1.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2. 판매인지정서

제5조(판매인의 영업상 의무) ① 판매인은 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판매인은 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, 필요한 물량은 유선,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 봉투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급대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

10. 5, 2015. 12. 21〉

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,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,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. 〈개정 2015. 12. 21, 2021. 11. 15〉

제6조(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) 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〈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, 2021. 11. 15, 2023. 11. 30〉

1. 제5조를 위반한 경우

2. 시장이 정한 대금 납부기한까지 봉투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 판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

② 판매인이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휴업·폐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〈신설 2023. 11. 30〉

③ 제1항에 따라 판매인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인 지정을 제한한다. 〈신설 2023. 11. 30〉

[제목개정 2023. 11. 30]

제7조(봉투의 판매가격 결정) 봉투의 판매가격은 「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15. 12. 21〉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8조(청문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〈개정 2005. 10. 5, 2015. 12. 21〉

제9조(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) ① 시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자료요청 및 서류 열

람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1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2 훈령 제5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8. 31 훈령 제123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219호>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21 훈령 제389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1. 15 훈령 제499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  
인시 규정 일괄개정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1. 30 훈령 제52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<b>판 매 인 지 정 신 청 서</b>				처리기간 15일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위 치		전화번호	
	상 호			
영업소 위치				
판매인 구분			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귀하</p>				
구비서류 1.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.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				수 수 료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제 호  <h2 style="margin: 0;">판 매 인 지 정 서</h2>			
성 명		생년월일	
주 소			
상 호			
영업소위치			
판매인구분		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용 인 시 장</p>			





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5. 12. 21>

용인시 종량제 봉투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서

구 분		신 청 수 량		비 고
		매수	금액	
합 계				
음식물 전용봉투	1 ℓ			
	3 ℓ			
	5 ℓ			
	20 ℓ			
일 반 용 봉 투	5 ℓ			
	10 ℓ			
	20 ℓ			
	50 ℓ			
	100 ℓ			
불 연 성 마 대	20 kg			
	50 kg			
재 사 용 봉 투	10 ℓ			
	20 ℓ			
대형폐기물처리비 납 부 필 증	1,000원			
	2,000원			
	3,000원			
	5,000원			
	10,000원			

위와 같이 용인시 종량제 봉투를 (매수·교환·환매)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인)

용인시 종량제 봉투 공급대행자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 <신설 2023. 11. 30>

### 판매소 휴업·폐업 신고서

(제6조제2항 관련)

<b>판매소 (□휴업·□폐업) 신고서</b>				처리기간
				3 일
판매인	성 명		지정일자	년 월 일
	생년월일			
판매소	상 호 명			
	위 치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휴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폐업	일 자		재개업 예정일자	(휴업인 경우)
	사 유			
<p>「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」 제6조에 따라 판매소를 [<input type="checkbox"/>휴업, <input type="checkbox"/>폐업] 하고자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신고인 (인)</p> <p><b>용인시장 귀하</b></p>				
구비서류 : 판매인 지정서				수수료